

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

[시행 2023. 10. 4.] [조례 제8959호, 2023. 10. 4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(건축기획과), 02-2133-7102

제36조(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)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·조정 등 건축·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(이하 "서울총괄건축가"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9>

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7.19>

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8.7.19>

1. 시 건축 및 도시·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

2.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. 다만,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(박물관, 미술관, 전시관, 공연장) 건립사업

나. 교육시설관련 사업(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)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(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)

다.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(공원, 교량건설, 도로, 지하철 관련사업 등)

3.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·도시개발사업·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

4.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

5.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

6.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

7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④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⑤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(입찰, 현상공모, 용역 수행 등)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5.14]